

경기도, 평택항 배후지 자유무역지역(FTZ) 지정방안 추진

황해경제자유지역과 연계, 자유로운 무역활동 지원 등

경기도 평택항 배후지를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위한 지원과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지역과 연계해 평택시 포승면 평택항 배후부지 160만6천m²를 무역활동이 자유로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중 평택항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안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보완 신청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중인 평택항 배후단지는 평택항 전체 매립지 1천370만m² 가운데 내항과 접한 1단계 사업부지로 항만 물류와 지원시설, 컨테이너 야적장과 공공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 항만관련 R&D시설과 가공·포장·조립 등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물류클러스터로 조성되며 도와 해양수산부는 820억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항 일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항만배후단지를 관세와 무역활동에 대한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연계 지정하는 안이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자유무역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과 충남 서산, 당진, 아산 등

5곳 6,800만m²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으며, 9월말에 이 지역에 대한 추진체계와 사업시행 계획 등을 보완한 신청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정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의무화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최근 ‘가스 3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금년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 정비, 안전점검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상기 시설을 설치하는 연도 및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LNG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